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박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근거 신설〉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969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선박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2025년 2월 7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선박시설의 기준 및 선박위치 발신장치 등 선박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 선박에 선박 보안과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효과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 자료 부족으로 인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곤란한 실정임.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규격 및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설치 기준 부재로 인하여 설치 형태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 선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기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박의 보안을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89조제2항제7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선박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선박의 보안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대상 선박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89조제2항제7호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보안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과태료) ① (생략)	제8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u>7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u>
8. ~ 28. (생략)	8. ~ 28.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¹⁾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선박의 유형 및 시설별로 강선의 구조기준, 선박구획기준, 선박방화구조기준, 선박복원성기준 등 29개의 고시가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선박 예컨대 카페리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16호) 등에서는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카페리여객선에 대해서 선교에서 차량구역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1) 「선박안전법」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그런데,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선박 내의 통제구역 감시, 위험구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등을 수행하여 선박의 안전사고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바, 개정안은 선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다수의 선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형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데에 그 입법의의의가 있음.

- 개정안은 선박의 보안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대상 선박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선박의 보안을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 선박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련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면에서 먼저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²⁾ 원칙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한하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가능하므로, 「선박안전법」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짐.

-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해당 장치를 통해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한 유형임.

□ 다만,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일정한 공간에서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로 설치 시에는 선원 및 승객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설치 시 사고 저감효과와 선원 및 승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비교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참고로, 현재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련 규정을 보면 국제항해 로로여객선(로로화물구역의 침수를 야기할 수 있는 내·외부 선수문, 선미문 또는 그 외 현문) 및 국내항해 카페리 선박(폐위된 차량구역)의 경우 침수 감시 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기준을 두고 있음.

[표] 선박구획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43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로로여객선**"이란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에서 정의한 **로로화물구역*** 또는 **특수분류구역을 가진 여객선**을 말한다.

* "로로구역"이란 화물[철도 또는 자동차, 차량(도로 또는 철도 탱크를 포함한다), 트레일러, 컨테이너, 팔레트, 떼어낼 수 있는 탱크, 유사한 보관장치 또는 다른 용기속에 넣거나 위에 적재된 포장된 화물 또는 산적되는 화물]을 통상 수평방향으로 실을 수 있는 화물구역으로서 선박의 전장 또는 전장의 상당한 부분에 걸쳐 구획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기준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부선을 제외한다)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에 적용한다. 다만, 손상복원성 요건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80미터 미만의 화물선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한다.

제26조(로로 여객선의 선체 및 선루의 보전성, 손상방지 및 제어)

- ⑤ 특수분류구역이나 로로화물구역의 침수를 야기할 수 있는 **내·외부 선수문, 선미문 또는 그 외의 현문**의 누수가 **선교와 기관제어장소에 표시**될 수 있도록 텔레비전 감시장치와 누수탐지 장치가 설비되어야 한다.

제33조(로로 여객선의 특별 요건)

- ① 특수분류구역이나 로로 화물구역에 대하여는 황천(荒天)시 차량의 이동 및 항해 중 **승객의 무단출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감시장치와 같은 효과적 수단에 의한 지속적 순찰이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16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카페리선박**"이라 함은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
2. "**카페리여객선**"이라 함은 **제1호의 선박으로서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기준은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의 카페리선박과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차량구역)

- ⑥ 폐워된 차량구역을 가지는 카페리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교에서 해당 **차량구역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
 2. 선교에서 **차량구역 출입문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시등 및 가청경보장치

□ 따라서, 현재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과 별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필요한 선박의 유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사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보관 기준·기간 등 필요한 규정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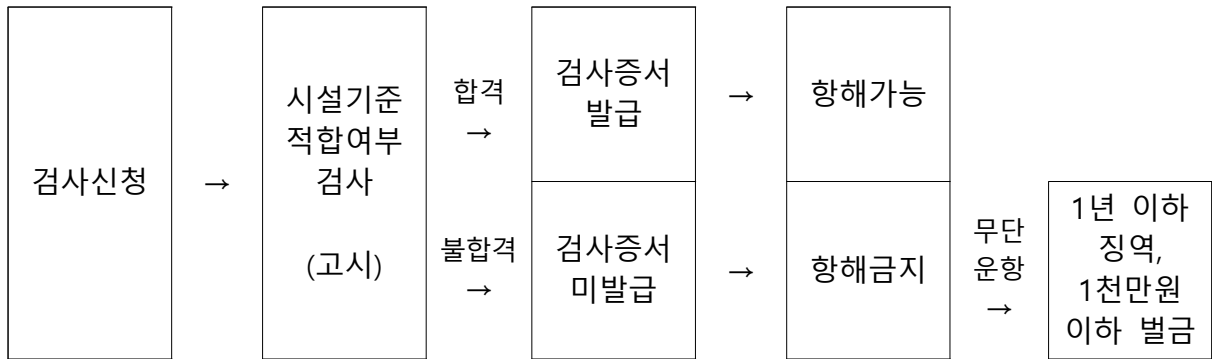
- 참고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①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예외, ②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③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 보관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한 설치·관리 기준을 두고 있음.

□ 또한, 현재의 입법 형식을 보면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시설 관련 사항은 기술적·전문적인 영역의 성격이 강하므로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데,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관한 사항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특히, 제재규정과 관계로 보면 현행법에서는 선박검사 시 선박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통과한 경우에만 검사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과하지 못해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됨.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여 규율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동일한 선박시설에 대해서 그 규율이 이원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

[표] 선박검사 절차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선박보안 확보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사고 저감효과와 선원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18